

# 동탄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안내

## ■ 청약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공급비율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총 36 세대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구성원이며,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포함) 이상을 둔 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자녀도 포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함 - 소형·저가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청약 자격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 된 주택 포함)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함. 단, 화성시 2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함 - 경기도 우선공급 세대수에서 낙첨된 화성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화성 2년 이상 거주)이 적용되지 않음
유의사항	※ 과거 특별공급 1회 사용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을 신청 할 수 없음 ※ 부적격 당첨 후 착오기재 소명자로서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 해당첨제한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특별공급 신청 할 수 없음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① 미성년 자녀수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② 영유아 자녀수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③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증명서로 확인 → 주민센터 또는 시·구청에서 발급 가능)
④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무주택기간은 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 포함) - 신청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인정)이 되는 날부터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을 처분한 후부터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⑤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 /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⑥ 입주자저축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 신청자의 청약통장 최초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함.

- ①, ②: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③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④, ⑤: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④, ⑤: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⑥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본 안내문은 편집 및 인쇄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청약에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 및 관계법령을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이 있거나, 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 적용됩니다.